

第2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93. 2. 18~2. 1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1.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55
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7
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1



#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3년 2월 18일 (목요일) 11시 00분

## 의사일정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판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영규)
2.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판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혁풍위원외 3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일위원외 3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사과장 이영규  
지금부터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로

이하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5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입니다.

2월 2일 김응복위원님의 세분위원님의 발의로 회의집회 요구가 있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93-2호로 '93년 2월 10일 공고되어, 오늘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두번째로 제18회 의결안건 도의회 처리결과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93년 2월 6일 제86회 충청북도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금주중에 도보에 게재됨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금번회기의 처리안건입니다.

이상일위원님의 세분위원님의 발의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상정되었고, 집행청에서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기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권혁풍위원님의 세분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홍신희위원님이 학내 학위수여식, 기타 학내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7분)

2.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일정안에 의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이상일 교육위원으로부터 발의된 회의규칙개정안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형편이, 지역교육청별 업무보고 행사와 교원정기 인사작업 등으로 교육감 및 국·과장 다수가 교육위원회에 참석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출한 질문요지서는 기 집행청에 송부는 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집행청의 사정을 감안하여 금번 회기에는 시급한 현안인 청주농고와 청석고에 관련된 질문·답변과 19회 임시회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고, 다른 질문은 차기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권혁풍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사회대로 나옴)

● 권혁풍 위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 권혁풍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93년 2월 19일 10시 30분으로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입니다.

당초 출석대상자는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과 각 국장 및 기획감사담당관이었으나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사 등을 고려하여 금번의 출석대상자는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국장 및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중개정규칙안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이상일 교육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정기회 회기를 5일간 늘려 20일간으로 하고, 소위원회 명칭을 실제 활용되는대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편의상 의사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사국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국장 이근수



의사국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  
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위원회 정기  
회 회기를 늘려 실질적인 안전심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소위원회를  
관련 조례등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명  
칭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3항의 정기회 회기를 5일간 늘려 20  
일로 하고자 하며, 안 제36조 제3항의  
소위원회 명칭을 실제 활용되는대로  
정리하여 조례·청원심사소위원회를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  
회로 구분하고, 감사·조사소위원회를  
감사소위원회와 조사소위원회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규  
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  
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  
니다.

(11시 14분)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  
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  
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  
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별첨 "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  
재 생략)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소속 별정 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등을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서, 직 무분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있 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서 직접 다루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은 제2차 본회의 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그러면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일, 김응복 두분 위원을 선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 원으로 이상일, 김응복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 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박동기,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별첨 2.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3년 2월 19일 (금요일) 10시 30분

## 의사일정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 기타 안전처리

## 부의된 안전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답변
4. 기타 안전처리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어제 2월 18일 도교육청에 이송하였  
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교육위원회회의규  
칙개정안과 교육감소속별정직공무원  
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2분)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중개정규칙안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  
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사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사항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 김응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  
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  
원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  
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  
정조례안 ( )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하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세요.

● 권혁풍 위원

예, 권혁풍입니다.

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라고 이렇게 제명을 바꿨는데, 여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소속별정직공무원은 바로 의사국 직제내에 속하는 그런 별정직이라고 보겠는데, 그렇다며는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의사국 직제를 우리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우리가 받고, 뭔가 좀 지방교육자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징후로써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뭔가 과거에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기본 취지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꼭 교육감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물론 여러가지 집행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가능합니다마는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의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꼭 교육감 규칙으로 만들어야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위원석 침묵)

예, 그러면 권혁풍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지금 권혁풍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설명부터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28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 소속구분이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통일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24일날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지침을 개정 통보하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규칙의 제명을 "교육위원회 및" 이렇게 속에다 넣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28일자로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규칙에 교육부 지시대로 "교육위원회 및" 이렇게 제명을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 7월 31일자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조례를 개정·공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확실하게 "교육위원회소속", "교육감소속" 이렇게 소속구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구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임용권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에는 "의사국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라고 되어 있고, 3항에는 "그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31일자로 조례를 개정·공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교육위원회소속 사무직원은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을 가진 교육감한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위원회 및" 이것을 안붙인다고 할 것 같으려는 지



금 현재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  
등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사국 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도의 조례를 또 하나 만들  
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국 직원이 되었건 교육  
감소속 직원이 되었건, 지금 현재는  
조례로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  
는 것을 지금 별정직 공무원의 직종  
이 다양화 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  
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대는 한 여  
덱가지 종류분야가 있습니다.

그것도 직급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청에도 한 일곱  
가지 정도의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의 직종이 바뀌고 또  
직급이 바뀔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  
감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답변 되었습니까?

권위원, 어떻세요?

● 권혁풍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러면은 별정직이 의사국에만 국  
한된 것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물론 그렇습니다.

● 권혁풍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항에 그"5급  
상당, 6급 상당" 지금 나온 것이 다  
별정직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렇다면 학생수련요원에 대한 입  
용기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감  
소속이기 때문에, 물론 다 교육감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  
선 이것만은 어쩔수 없다고 보더라도

의사국의 별정직까지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임용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의사국 직제의 정수를 조례로 정한 기본취지에서 상당히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조례권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지금 교육자치가 보다 활성화되려면 교육위원회 조례권이 보다 확대가 되고, 그러한 방향이 오히려 옳바르리라고 보는데, 그 반대방향을 밟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의사국의 별정직만은 조례로서 임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조례가 두개가 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국에 속한 직원도 결국 의장하고 협의해서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하는데는 여기 의사국에서 필요로 하는 책임자가 임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글쎄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협의인지, 결국 협의가 안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조례에 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예, 제가 타 시·도의 실례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청북도나 또는 교육청도 타 시·도에서는 교육감한테 임용자격 기준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 3항을 바꾸는 건데, 그 4조 3항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한다" 했던 것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신속하게 인사관리 업무를 추진해 갈 수 있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권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 권혁풍 위원

"조례로 정하면 탄력성이 없고, 규칙으로 정하면 탄력성이 있다" 했는데 항상 조례도 불합리한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다달이 열리기 때문에 열마든지 불합리한 것은 그때 그때 고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때, 그런 점도 납득이 안합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물론 조례로 정하면 탄력적이지 않다고, 하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례 한번 개정하려면 저희가 도의회까지 가야 되는 등, 사실은 결원이 생겨도 적기에 임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더 이상 보충질의.....

● 부의장 김광수

참고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교육감 규칙이라고 하는 그 내용중에서 특히 우리 의사국에 관한 말이 더 심층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럴적에 의사국 직원을 발령할 때에는 이제까지 관례상 의장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령이 되었는데 하는 것을 우리 의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처음에 의사국 발족 당시에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미 소집되기 전에 의사국 직원이 전부 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후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도 하부직원을 배속할 적에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교육감한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로는 교육감이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그렇다고 할적에 지금 현재 질의를

하신 권혁풍위원님의 뜻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며는 직원을 하나 채용하는 것이라든가 전부가 능률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불적에 특히 우리 의사국 문제에 한해서 의장하고 충분한 사전 상의가 되고 협의가 잘 돼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집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물론 그 행정편의 위주로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 규칙으로 하려는 훨씬 편의성은 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임용기준이 엄청나게 사회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한번 정해 놓으려는 별 변동이 없는 이상은 그대로 아마 상당기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겠는데, 이게 마치 1년에 몇 번씩 변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기간 장시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구태여 조례권에 정수까지 정해진 별정직을 갖다가 임용기준만을 따로 떼어서 규칙에다가 둔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교육자치발전에 가장 첨단을 걷는다는 그런 내용을 허실화 시켜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응복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응복 위원

의사국 직제는 교육위원회 조례로 정했는데, 그 제목을 당연히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으로 쌍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이나 교육위원회의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목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교육감의 융통성과 신속성,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했다고 해서 종전에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 조례로 정한 것이 침해되는 점이 있겠느냐, 그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은 조례로 정하되, 그 인원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무국에 직원의 실질적인 발령을 하는 분은 교육감님입니다.

동시에 이 조례로 했을 적에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육위원회 조례가 그 권위라든가, 실질적인 면에서 침해된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라면 효율성, 신속성, 능률성, 이런 뜻에서 이번에 내놓은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찬성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보충하실 말은 필요 없으시겠조?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1명 거수)

예, 반대의견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찬성입니까?

거수해 주시지요.

(위원 10명 거수)

예, 그러면 10대 1.

본 안건은 원안에 찬성 10, 반대 1  
표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 3.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제 1  
차 본회의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청주농고와 청석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수 부의장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문은 일괄질  
문·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시에  
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부의장 김광수

김광수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요즘 사  
회적으로 대학입시 부정문제가 아주  
대단히 무리를 빚고 있는 요즘에 이  
교육계에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  
을 던져준데 대해서 저희들 자신도  
상당히 참 유감을 표하는 그런 심정

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적에 우리 충  
북 교육도 이러한 대학부정 입학문제  
에 관해서 한점 흠이 없이 깨끗하다  
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을 뒤돌아 볼 적에 우리들 교육계에  
중사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재조명하고,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  
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학입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등  
학교 교육을 마치고, 대학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발이 됐  
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이것은  
대학을 갈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여  
기에 있지만, 그 보다도 앞서서 문  
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도덕적인 문  
제라고 봐집니다.

그동안 교육위원이 되면서 우리들  
이 입시문제를 계속 문제시 해 왔고,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입시문제보다  
는 인간교육이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상 먼저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입시문제, 부정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교육에 따른 이 도덕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봐져서 우리 사회일각에서 교육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 같이 다 반성을 하고 책임을 느끼게 할 문제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전제했을 적에 저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직업의식보다는 천직으로 생각하고, 아주 이 교육계에 봉직한다는 그러한 책임의식에서 교육자가 왜야지, 이것을 하나의 직업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농고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서 이것을 질문에다가 내놓은 그런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까지 이

문제가 다루어졌고, 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었고,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 경위를 간담회 석상에서 들었을 적에 "시험지를 내주지 않고 시험을 봤다, 그 다음에 그 것을 알고서 다시 학생들을 소집하여서 시험을 봤다 뒤 별일없이 지나갔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나와서 처음 알았다", 도 감독관청인 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서야 겨우 알았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얘기를 들었을 적에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전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입시문제가 하루 이틀전도 아니고 벌써 오래 전인데 그 학교의 교장은 학교에 일어난 사항을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 한마디 보고가 없었느냐 이겁니다.

교육청에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또는 하나의 공직자로서의 책임이행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나 이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문제가 되고, 그 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만 "늦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바로 보고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보고가 안돼서 늦게 알았는데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청석고등학교의 육성회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들 각자에게도 그렇고, 또는 교육청 당국에도 그렇고, 또는 다른 요소 요소에 다가가도 이 진정, 청원같은 것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 진정 내용에 관해서 얼마만큼 조사가 됐고 또 그 사실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오늘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다됐으면, 또 이상일위원 질의 하십시오.

● 이상일 위원

이상일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대학입시 부정사건 때문에 참으로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계에서 앞으로 입시부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고질적인 한국병, 이게 결국은 우리 교육계에 깊이 침투되어서 교육입국의 의지가 꺾이고, 한국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정한 검은 돈의 탁류에 중·고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대학교수, 총장들이 맥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것 참 부끄럽다, 이것 큰일났다"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계가 모두 나서서 입시부정 척결을 위한 어떤 결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입시부정 방지를 위해서 과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입시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학시험 때가 되면 문제지 관리 때문에 해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데, 몇 년 전에는 그 주덕고등학교에서 이틀에 보아야 할 시험을 하루에 봐버렸기 때문에 사전에 입시 문제가 유출이 돼서 큰 물의를 이트킨 적이 있고, 또 작년도 시험에는 청주 농고에서 문제지를 배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입학시험 때는 감독선생님들에 대해서 철저히 주지를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했기에 시험을 이틀에 볼 것을 하루에 보고, 내주어야 할 시험지도 안내주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입학시험을 얼마나 신뢰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지 관리에, 또 시험감독 관리에 철저한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 하고, 두번째, 주관식 문제

의 채점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는지 하는 겁니다.

이 주관식 문제의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세번째로 그 컴퓨터 조작에 대비한 방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어 보고 싶고.....

두번째는 내신성적 관리문제입니다  
이 내신성적이 대학입학 시험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큼니다.

내년부터 40%로 정하고 있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본 고사를 치루지 않고 내신성적과 수학능력 평가시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내신성적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큼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공정한 성적을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잘 되고 있겠느냐, 과거에 어느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성적을 조작을 해서 큰 문제가 됐던 일이 있

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잘못된 생각, 특히 어머니들의 치마바람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성적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하는 것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주농고 입시부정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건만 터져서 보도만 되고 있지 그 후에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 적당히 넘어가는 것 아니냐,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주농고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앞으로 진정서가 한 건이 들어 온게 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은 중원군 상모면 미륵분교가 폐교가 됐고, 그 폐교된 학교를 중원군청에 매각을 했습니다.

약 1억 4천만원 정도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고, 또 저희 집에도 몇 번 찾아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를 지을 때,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찢찢매니까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회사를 한겁니다.

그 뒤에 또 선생님들이 기거하실 숙직실이 없다고 해서 동네에서 곡식을 모아서 계를 해가지고 숙직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게 아직도 안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는 매각이 돼서 학생들은 거기서 한 6km 떨어진 수안보 국민학교로 통학을 하게 되는데, 충주교육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매각 대금은 전액 수안보국민 학교 급식시설 및 편의시설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투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동네 주민들은 "가난한 주민들의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어떤 법인같은 것을 만들테니 그 법인에 장학금을 좀 출연해 줄 수 없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면 개인이 기부채납한 재산은 국가재산이고, 그 처리된 것을 국가가 마음대로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라고 할까, 또는 그 동네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약간의 장학금이라도 출연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석 침묵)

지금 두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잠깐 보완해서 본인이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주농고 입시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45일씩이나 은폐됐다가 이것이 신문 보도상에 발각이 되어가지고서 그

제서야 감독권이 발휘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청주농고에서 그 수습방안으로"공개된 시험문제를 가지고서 다시 시험을 보아서 그 학생 두명을 구제했다" 이런 해결 방법으로 간담회에서 그렇게 해결됐다고 나왔는데, 감독청에서는 과연 그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었느냐, 그렇게 구제한 방법이 법규상이나, 모든 교육적·도덕적인 면에서 올바른 방법이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45일씩이나 은폐되었던 사건이 탄로가 났는데, 어찌 감독청에서는 즉각 감사전문 인력으로 감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중등장학과로 하여금 장학사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쳤느냐, 그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 두가지를 더 보완해서 답변하여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청에서 우리가 질문한 내용을 준비시간 없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부교육감 박동기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잠깐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11시 23분)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교육 관계로 인한 여러가지 대학입시 부정이나, 또 아울러서 고등학교 입시의 부정이 발생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입이 열개라도 말을 못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본 도에서 이루어진 청주농고의 입시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감독관으로서 감독이 그 동안 소홀히 됐다 하는 그런 책임감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은 이미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동안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입시관리 소홀로 인해가지고서 그 관련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감독교사 두명은 2월 12일자로 교육부에 징계를 상신중에 있습니다, 상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은 2월28일자로 정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훈장, 동백장도 취소가 돼서 명단에

서 삭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감선생님이나 감독교사에 대한 조치도 교육부에서 어떠한 지시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후 그런 결과처리가 도착이 되며는 본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처벌문제가 논의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 교장실에서 감독요원으로 있던 다섯 분, 그 분들도 그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조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서 청주농고에 관련된 처리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재고사 문제는 누가 뭐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입시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이렇게 봐서 정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마는 입시판리는 주로 장학과에서 취급을 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장학과에서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이라서 참 아님 밤에 홍두깨로 맞은 격이 됐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전문적 계통이라 해서 그 학교를 옹호한다던가 그러한 일은 추호도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시부정 방지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고교입시 부정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되고 있는지요?" 그 중에서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문제지 관리하고, 주관식 문제 채점, 컴퓨터 조작 방지책,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지 관리는 출제위원장 책임 관리하에서 출제를 하고, 그 출제한

문제지는 학교장 책임아래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님들은 일정한 비밀장소에 연금이 되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은 과거서부터 주욱 계속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중등장학과에서 인수해서 즉시 각 학교 교감 외 1명을 소집해서 그 문제지와 답안지, 모든 유의사항 일절을 학교장 책임하에 배부를 해드립니다.

학교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관리를 해서 그 문제지를 인수한 당일 날은 교감선생님 외에 두 사람의 당직자를 보강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전부가 서약서도 받고 있는 실정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정이 생겼다, 대학 입시의 부정이나 이런 것은 도덕성의 결핍에서 온 하나의 우리나라의 황금만능주의에서 입각한 것이고, 하나는 또 입시위주로 대학만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도덕성 회복에 적극적인 교육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주관식 문제 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는 주관식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사지선다형, 또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작문 고사만은 채점기준을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채점위원을 위촉해서 본청 강당에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완 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기에 참여한 채점위원들에 대한 서약서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조작 방지에 대해서, 이것은 본청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에서 전산계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고, 거기에는 전산요원 6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에게 보완유지를 철저히 해서 채점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답안지에 오류가 나왔다던지 할적에는 수동작

업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문제, "고교 내신성적 처리 문제로 때때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정한 성적처리를 위하여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요?" 첫째, 저희들이 매년 학년초가 되면 고등학교 교감 회의시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시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담당자한테 숙지 시키도록 하고, 또 전 교원이 현직 연수를 하도록, 그래서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대학입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자, 담임선생님만 알 것이 아니라 전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협의시마다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생활기록부 기재의 철저, 이것은 누차 계속 수시로 이성적을 기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철

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도 이 성적만은 회계감사 차원보다 더 높게 업무를 처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행동발달, 또는 특별활동, 또는 교내외 봉사활동, 이것까지도 전부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 평가는 크립활동 부서별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외 봉사활동 평가는 학교사정위원회, 또는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에 있어서는 근거되는 보조자료를 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작성 담당자가 정정날인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의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시 두줄을 긋고 날인 후 여백에다

가는 수정자 수를 표시하고, 판인을 날인하도록 이렇게 모든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교내신 성적은 이와같이 공정하게 기록된 내용을 석차 연명부 양식에 의거 대학에 공문으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도에서는 그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답변말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며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중등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주농고의 시험문제 관계 가지고 아마도 교육청 당국에서도 많이 심려가 됐고, 그 동안 조사도 철저히 하게 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된 다음에야만 이것을 알았을까, 40여 일이나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게 책임과 명령소재가 제대로 체계가 안 서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도 제가 도덕적인 것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학교에서 이와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며는 즉각 상부 교육청에다 보고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보고가 안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안됐을까, 하는 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제가 질문서도 내놓았습시다마는, 이 교육청 당국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에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 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여간 심려와 더불어 염려스러운 생각이 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며는 전문적인 그 장학진이 가서 조사만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요즘 학교의 부정사건 문제를 볼 것 같으며는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서 손을 대고 있고, 요즘 국회에서 답변은 교육부장관이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적에 조사는 형사적으로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손을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래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나가서 그 경위와 또는 책임자의 소신을 분명히 담아왔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이것을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조사정도로 그치고 감사를 안하고 말았는가 하는 그 경위를 좀 부교육감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 명령체계 좀 분명하게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저희들이 청주농고건을 알고서 즉각 다음날 장학사님을 파견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말의 내용은 좀 기록을 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질문드린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대충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식 회의석상에 이것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식으로 기록을 하고 안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는대로 그대로 전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 의장 김영세

기록 삭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어떤 그 회의진행에 오류가 있을 적에 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만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공개하지 못할 얘기가 있으면 다음 장소로 옮겨서 비공개로 답변하실 수 있지만 기록삭제는 불가능합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제가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정순홍 교감선생님의 문제

가 개재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교감 선생님이 이번 3월 1일자로 승진서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효영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떠한 행정체제를 무시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만약에 이러한 건을 보고했을 적에는 자기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 부하직원인 교감선생님의 승진이 안되는 것을 알고서 아마 그러한 사정하에서 이것을 보고를 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감선생님도 그 명부에서 삭제가 되고 해서 승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한 사정말씀을 올립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부의장 김광수

부교육감님이 참석이 되셨기 때문에 감독관청으로서의 책임소재가 어

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이게 우리 교육청에도 감사담당관이 계시는데 감사를 당연히 해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되고서 대책협의회도 열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학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시설문제에 어떤 누수가 있다던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할적에는 시설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입시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 장학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의 일치로 봐서 장학과에서 손을 댔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예, 이게 그냥 너무 일문일답식으로 도리없게 되어서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학교에서나 또는 다른 하급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적에 그 즉각 도교육청에 보고가 되는 것

인지, 그렇지 않고 승진문제라든가 이렇게 있을 적에는 방향을 달리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건으로 봐서는 우리충청북도 교육청 관내에 상당수 이런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현재 주로 보고사항은 생활지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사항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신상관계는 수시로 보고가 있습니다, 즉각 보고가 있는데, 이 입시소홀에 따른 보고는 교장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정으로 봐서 모든 것을 교장선생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책임하에서 아마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그래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다음에 책임진다는 말이 없었어요, 먼저 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교장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안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는 분에게 동백, 장까지도 취소할 정도로 됐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된 그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여기에 감독관으로 들어간 선생님, 또는 감독위원으로 간 다섯 선생님들이 다 여기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는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시시비비를 가릴 적에는 분명하게 책임한계를 가려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나갈려고 하는데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보충질의 또 없으십니까?

● 부의장 김광수

예.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예, 장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예, 지난 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는 그 동백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참 우리 도내 교육계의 원로로서 모든 분들이 존경을 하고, 숭배를 하고 있는 분인데, 참 어떻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가 안타까운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꼭 그분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교감을 사랑하고 또 동백장이 취소됐고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있는 자신이 교감이면 교감, 교장이면 교장, 자신에 관한 얘기로 우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은 조금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비록 금년 2월 말일로 정년이 되어서 그만둔다하더라도, 설혹 내일 그만둔다하더라도 "오늘 내가 사표를 내고 교

육자적 양심에서 내가 전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다며는 사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아깝구나" 이런 동정의 소리가 나오고 일반사회의 궁금증이라는 것이 깨끗하게 동정의 바람으로 수습이 잘 될텐데 어째서 그런 결단력, 교육자적인 양심을 이럴적에 발휘를 못했는가,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몰랐었습니다마는 차후에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님께 구두로 사의 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재희위원 말씀하시죠.

● 이재희 위원

저도 장충호위원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동정이 가면서도 그 결과가 너무 미온적이고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엄청난 교육계의 문제인데 지금 징계가 상당히 미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만약 파면이 된다고 하면 퇴직금까지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만약에 안효영 교장이 징계 파면 된다면 2월 말일이 정년인데 이것이 요식행위 절차를 거쳐서 그 날짜를 기다리다 보면 퇴직한 이후에 징계가 이루어지던지 아니면 없던지 할 텐데, 사실 이런 것은 서두르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라도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또 입시관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요식행위 보다도 이런 것은 퇴직 전에 징계가 완료되는 요청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28일날 정년퇴임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결말을 지어줘야만 저희들도 교감 선생님과 감독교사 두분에 대한 보통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교육부에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것도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고, 좀 욕심 같아서는 전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교육감 명의로 무슨 성명서라도 하나 발표를 해서 도민들에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 의장 김영세

또 있으십니까, 내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 문제로 하여금 보고형식의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때 얘기할 적에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처리과정이 석연치 않을 때는 본회 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분명히 우리가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어떤 처리과정

을 하나도 그간의 경과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여기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어요.

입학시험 문제는 실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자율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험제도가 부당하게 되고 부정이 저질러진 것도 학교장의 자율권에 속하기 때문에 감독청의 책임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요, 또 하나는 재시험 본 것은 확실히 부당하다 했는데,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부정이예요, 원천적인 부정이요.

공개된 시험문제를 가지고 그것들은 폐하려고 다시 시험을 봤다, 다른 시험을 출제했다고 해도 이것은 원천적인 부정인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그 학생들을 구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제방법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우리 교육계는 과정이 잘못 되었으면 올바르게 처리하

는 이런 교육자적인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바른 방향에서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어야지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생을 구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친다, 이것은 미봉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권은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학시험이 중등장학과 관할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교육감 소속의 감사권은 감사실장한테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지금 중등국장께서 어디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때에 시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설과에서 나가는 것은 확인이지 감사가 아니예요.

감사권이 발동돼 가지고 거기에 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는 전문인력을 대동하고 가서 감사결과가 정확히 있어야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지 확인만으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하나, 내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 청주농고 입학시험 문제의 처벌과정이 감독청으로서도 매우 미온적이었고, 또 매우 지지부진하고

어떤 확연한 거리감도 있어요.

지금 장충호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처음에 책임질 사람인 교장이 사회에다가 몇몇히 사과하는 풍도가 있었더라면 사회적인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또 이재희위원님께서 발언한 대로 적어도 충청북도 교육의 책임을 진 총수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어떤 공식성 성명이 있었던들이 또한 양해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동정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하나도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은폐하려는 이런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감독청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냐, 나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질문합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 감독청의 책임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런

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어떠한 뭔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 저희들이 상신한 징계위원회 요구사항도 원래는 교장선생님만 올리고 그 다음에 교감과 감독교사에 대해서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라는 동일 건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네분에 대한 모든 징계서류를 교육부에 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뭐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영세**

내가 질문한 요지를 하나 하나 짚어서 답변하세요.

입시부정 문제도 학교장의 자율권에 속하느냐?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자율권에는 속하지 않죠.

- 의장 김영세  
아니죠?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도 책임이 있죠.

- 의장 김영세

그 다음에, 재시험을 본 방법이 합  
당한 구제책이냐, 아니면 원천적으로  
원칙대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런 얘기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래서 그 두학생, 그러니까 네학  
생입니다.

48명중에서 44명은 선택과목의 점  
수를 제로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 합  
격이 되고, 4명이 불합격이 되는데,  
그 4명 중에서 학교에서 재시험을 치  
른결과 거기에 가산점 2점인가 얼마  
를 플러스(+ )하니까 두명이 합격권내  
들어갔다는 얘기이고, 두명은 10문제  
를 재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점수로  
환산하더라도 불합격이 되는 그런 처

리에서 두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여  
하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학  
생들한테 불이익 처분을 취서는 안되  
겠다고 해서 특별정원 요청이 들어와  
서 2명이 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 의장 김영세

아니, 중등국장님이 얘기하는 중에  
두사람 재시험을 봐서 2점이 플러스  
가 됐으니까 그 애들이 합격권내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안된다 이것입  
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렇죠.

그것은 원래가 부당한 것이죠.

- 의장 김영세

그런데 그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인 해결방법으로 해결을 했어  
야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입  
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양해를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 요구를 하는데는  
확인만으로도 징계 요구가 됩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징계요구가 됩니다.



● 의장 김영세

그래서, 감사권을 발동 안한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까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물론 감사를 해야지만.....

● 의장 김영세

더 감사를 해서 철저히 규명했어야 옳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교감이 교장 승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동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은폐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육계를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요, 지금.

그러면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동정에 의해서 교육을 망칠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독판청은 당연히 결연히 나서서 감사권을 발동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감사권을 발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대책협의회에서 이것은 입시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니 장학과에서 확인 조사를 하도록 의사가 일치됐기 때문에 장학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즉각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감독청에 보고를 했다고 하려는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은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그 징계양정에 따라서 구제될 수 있는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교장선생님의 역할과 교감선생님의 역할을 하나 하자없이 추진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감독교사 두분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 관리자인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법에도.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모르셨던지 어떻게했던지 간에 이것을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45일동안 전혀 몰랐었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 의장 김영세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면요, 물론 그 사건을 은폐하고 부정한 것으로한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 이 처리과정도 감독청에서 내가 불적에는 매우 부진해요.

또, 매우 미미하고 성의없이 처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청의 책임 여하는 중등국장님이 못하실 테니까, 이따가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셨으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 부의장 김광수

예, 결들여서 하는 말인데, 지금 대학의 부정입학 문제가 광운대학에서 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른 대학까지도 계속 파급이 되어 나가고 있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청주농고에서는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아서 부정시험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 충북 관내의 다른 고등학교에는 일체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 관내에 놓고 이외에는 여기서 채점을 전부 했기 때문에 채점상에 하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런 부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놓고 입시부정은 재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이지, 재시험만 치르지 않았으면 감독소홀입니다, 그것은 감독소홀.

그래서 놓고 문제가 야기가 됐습시다마는 기타 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청주농고 사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청석고등학교 문제를 김광수 부의장이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입니다.

김광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청석  
고등학교의 육성회비, 보충수업비 운  
영과 관련하여 동교 교사의 무기명  
진정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감사결과  
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상에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진정내용은 본 교육청에 직접 진  
정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학교의 여러가지 인적구성이 인화  
가 잘 안되는 그런 과정에서 빚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들은  
두번에 걸쳐서 특별감사를 하게 되었  
습니다.

첫번째 감사는 10월 20일부터 21일  
까지 2일간에 걸쳐서 했고, 두번째  
감사는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에 걸쳐서 지도계장의 1명이 나가  
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성회 찬  
조금 징수 및 관리집행 상황 또 일반  
보충수업비 및 예산계상 여부, 특별  
보충수업비의 연구주임 수납 및 예산  
미계상 편성운영 여부, 이 세가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육성회 예산 집행내역 공개여부는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부서별로 부분  
별로는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산을 해서 총괄적  
인 공개는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91년 이후부터는 공개를 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또, 육성회 찬조금 징수 및 관리  
집행 상황은 전체 찬조금 징수가  
1,170만원이었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것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육성회 임원 73명이 1인  
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각출한 것이  
1,170만원이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적외  
집행이 78만원이었습니다.

78만원의 목적외 집행은 3학년 담  
임교사 교통비로 20만원, 유도부 격  
려금으로 25만원, 자율학습 지도교사  
10명에 대해서 수당으로 33만원, 이  
것이 목적외 집행되었고, 또 집행잔  
액 271만 1,327원은 육성회 회장 이  
름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

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1년도에도 찬조금품을 800여만원 모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해년도마다 회계를 처리한다해서 정식회계도 아니기 때문에 교장 지시하에 관계 증빙서류는 전부 폐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유도부 격려금 25만원, 3학년 담임교사에게 지급한 교통비 20만원, 또 자율학습 교사에게 지급한 지도수당 33만원, 또 집행잔액 271만 1,327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회계인 육성회에 회수 조치해서 편성을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충수업비 예산 계상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의 재적 학생수는 1,69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628명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했고, 이것은 재적 학생수의 95%에 해당되는 세입 조치를 했기 때문에 세입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보충수업비의 연구

주입 수납 및 예산 미계상 편성운영 여부, 특별 보충지도는 대체적으로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일요자습반, 특수반, 독려반, 이런 세가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된 학생은 272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징수한 보충지도비는 2천 89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목적외 사용된 것이 104만 3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이중에서 전국유도대회 종합 우승 축하 심판·임원 회식비가 40만원, 학교대회 참가교사에게 격려금 30만원, 유도코치 격려금 10만 5천원 그래서 97만 3천원이 목적외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도부 과일 급식대가 4만 2천원, 학교 작업자 간식비가 2만 8천원, 그래서 7만원이 목적외 집행이 됐고, 합계가 104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충수업비를 목적외 사용한 104만 3,798원을 변상 조치해

서 육성회에 편입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교장선생님에 대한 진정의 내용이 전부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두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고, 인사조치 할 것을 재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기가 되며는 재단측에서 인사조치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 부의장 김광수

예, 청석학원 문제는 무기명으로 진정이 되어서 유기명보다는 낫습니다. 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서 그러한 내용을 밝혀 냈다고 하니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 부의장 김광수

그런데 그 증빙서류를 교장지시에 의해서 폐기했다는 그것이 조금 아쉽

고, 문제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네, 실은 이것이 검찰에도 무기명 진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착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용 종결을 지었는데 검찰에서도 사실 이것이 착복이었다든가 또는 공금을 유용했다든가 했으면 상당히 처벌이나 이에 대한 댓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외 집행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더이상의 사건으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정도의 증빙서류를 폐기했다, 이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단 그 내용의 금액이 800여만원이었고, 또 지도하는데 변태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처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예, 사학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당

국에서 평상시에 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지고 청석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새 학년도에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몇 년이나 근무를 했어요, 교장으로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12년 근무를 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12년 재직을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예.

● 부의장 김광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더 질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 4. 기타안건 처리

● 의장 김영세

다음은 기타안건 처리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9회 임시회시 권혁풍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우선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덟가지 내용을 답변드리기 앞서서 방금 중등교육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이러한 사안이 저희들 도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는 1급 참모로서의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교육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권혁풍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목표는 현재 집필중인 장기발전계획등을 고려하여 10년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도의 교육목표는 1991년 5월 대통령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밝힌 21세기에 요망되는 교육목표로서 "건강한 한국인"과, 또 '95년부터 시행될 제6차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인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초로 장기 교육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2000년대가 될 때까지 지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교육행정의 방향에 '점진적인 교육체제의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획일적 행정에서 지방분권적 체제로서의 전향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교육체제의 개선이란 교육의 효율화 차원에서 19쪽에 반영되어 있습

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며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재배치 문제 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실업계 또는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내지 직업과정 병설 운영문제, 그 다음 세번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신설과 개편,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요 업무 계획 10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을 실현한다는 차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인화 중심의 민주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측면, 세번째는 지시적 행정에서 현장우선의 지원행정 전개등을 의미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교육행정의 방향과 신념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신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교육행정의 방향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접근 방법의 일환으로 설정된 것이고, 또 교육행정의 신념이란 교육행정의 방향에서 제시

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방법들이 보다 확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교직원들이 가져야 할 다짐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교육감의 교육에 관한 의지, 다시 말씀드려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 "전년도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 과정을 거친 정도가 어느 정도였으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평가분석 과정에 어느 정도 작용하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전년도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각 과별로 현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를 작년도 9월 8일과 9월 17일에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작년도 집행업무 전반에 관한 협의회는 작년 10월 6일부터 이틀간 전문직과 계장급 이상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과별로 업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서 저희 행정전산망 구축외 45건이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과별 업무협의회가 종료된 후 실시되었으므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작년 12월 4일 개최된 기획소위원회와 또 작년 12월 10일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 의뢰시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권장사항 또는 검토사항·시정사항으로 각각 구분해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건전한 학생문화 형성'은 참신한 조항으로 보는 바, 몇 년동안 유지하지 않고 단년도에 종료하는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동질적인 사업을 하나로 묶음으로 인해서 3번에 "도덕성의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의 실현"에 하나의 덕목으로 삽입된 것으로, 동 사업은 종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항목에 그것만 표출이 되지 않은 것이지 3항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작년 12월 말에 배부된 교육시책 구체화 방안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상 우선 순위가 상이한 사유, 우선 순위는 사업에 비중이나 예산반영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순위는 교육시책과 '93년 주요업무계획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시책 구체화 방안은 그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회의 석상에서 초등국·중등국·관리국장이 각각 업무 소관별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마치 순위가 다른 것처럼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초·중등·관리국장 순으로 설명하는 그 순서일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상에 표기된 각 사업의 우선 순위는 있을 수 없으며, 부여된 순위는 업무를 구분하여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곱번째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는 연수

실시등 타율적 방법이 아닌 동기 유발이 되어야 하는데, 예로 전문직 공채 제도나, 전문직 우대책, 학생회관 야영장, 청주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보직, 또 적재적소 배치 등으로 전문직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되나, 이런 항목이 전혀 없는데 자율적 유인책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 향상을 주요업무계획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자기 연찬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해서 이에 실현을 위하여 교원 석·박사 과정의 특별연수 기회 확대를 보고드릴 때 교원대학에 금년도 석사 과정을 초등 20명, 중등 25명, 총 45명으로 확대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2년동안 충분히 심화·연구해서 우리 교육자치 또는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행정의 특성을 테마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한 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과교육 연구에 활성화나 독려, 장학회의 확대라든가

또는 자기장학의 정착등을 각각 명시해서 이와같은 것을 모두 "내발적 동기 유발을 위한 유인책"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거기다가 삽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풍위원님이 교육의 전문성 제고, 자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좀 미흡하다는 점은 사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보완해서 기피하는 전문직을 되도록이면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로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교육위원회에 보고로 그치고 있는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에서도 교육의 여건을 개선한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우선 순위등을 정할 의도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요업무 계획상 선정된 사업에 부여된 순위는 우선 순위가 아니고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에서 부분적인 것으로 교육본연의 활동에서 지엽적인

것 등으로 편의상 부여된 번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부여의 의미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고, 또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은 현행 규정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가지 문의하신 권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섯번째 "교육시책 구체화 방안의 순서가 발표하시는 국장님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시책에는 그러면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충청북도 교육시책에는 우선 순위가 없이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마는 그중에도 주요업무계획인데 그 주요업무계획이라면 여기도 뭔가 우선 순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투자도 그 순위에 따라서 어느정도 여기

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석·박사 과정을 교원 대에 과전을 해서 앞으로 요원으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석·박사를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어떤 연구접수에 가산점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언질에 불과한 것인지, 제도적인 가산점 제도가 확고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의 기피현상, 적재적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벌써 청주교육청에 가서 사체과장을 가지고 여러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서 적재적소가 되지 않고 있는가,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절름발이 교육이다, 어디까지나 사회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간단한 예로써 우리가 입시제도를 제대로 못 고치고 있는 것은 그 뿌리를 학교 교육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다 넓게

원인을 찾는다면 사회적인 차원, 사회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때 모든 교육 전반에 관해서 학교교육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사회교육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청주교육청의 사체과장을 벌써 몇 번에 걸쳐서 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전문직 배치를 기피하고 역시 일반직이 그냥 온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런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 ● 부교육감 박동기

세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장학 방침이나 우리 각 시도 교육청의 우선 순위는 제가 알기에는 정신적인 측면에서부터 물량적인 측면의 순위로 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정신교육 하려는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거기에서 교육과정 심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의 진흥교육 또는 개선 이런 등등으로 대개 순위를 정해 나열을 합니다.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측면으로 순위를 나열하는 것 뿐이지, 중요한 것이 첫째가 중요하고 둘째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3년도 계획을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편의상 초·중등 또는 관리국 순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 순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변명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석·박사 과정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명입니다.

이분들을 작년도까지는 세명내지 네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부터 과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자치제를 더 활성화 하고, 보다 더 정착시키는 이

런 제도를 우리 도에서 앞당겨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 도에서 착안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입소하기 전 저희들이 모아가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분 한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전문성, 교육자치, 교육행정의 특성, 이런 등등의 테마를 하나씩 하나씩 전부 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할 때 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다른 연수회 때의 공동 연구처럼 아무런 자격이나 또는 학위에 관계가 없다고 하며는 2명내지 3명을 분단으로 테마를 줘서 보다 더 공동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학위를 요하기 때문에 45명의 테마가 다 달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랄까 이론적·학문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인 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테마를 진지하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대우는 상응한 대우를 하도록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청주교육청의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을 작년부터 누차 우리 권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T·O 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변명 아닌 변명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한 예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 학생회관이 건립이 돼서 1년동안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직은 전부 보충이 됐습니다만 전문적인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이것은 저희 T·O가 동결이 돼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야영장에 수련활동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전문적인 연구사인데, 이 연구사의 T·O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더라도, 하고 싶은 갈망은 있습니다만 T·O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도 여러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사체과장도 T·O가 없습니까?

● 부교육감 박동기

없죠.

장학관 T·O가 되어야 하고, 연구관 T·O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연구관, 장학관 T·O가 지금 동결이 되어 있어요.

● 권혁풍 위원

작년에 청주시교육장께서 전문직으로 교체하시겠다는 그런 언질을 주셨는데.....

● 부교육감 박동기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주지를 앓으니까, 더더군다나 금년도 교원인사가 좀 늦은 이유

도 당초에 가배정으로 T·O를 중등에 39명 주기로 했는데, "못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동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자꾸 변화가 잦다 보니까 저희들 일처리가 지지부진합니다.

● 권혁풍 위원

그리고 석·박사를 앞으로 우대책을 하시겠다는 그냥 말씀 가지고는 어렵고, 전문성을 정말로 제고할 뜻이 있으시면 적당히 얼버무리시려면 모를까 정말로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어떤 제도적인 보장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산점을 몇 점 준다든가 그것이 있어야지, 그냥 교육감이 언질 주셨다고 해서 교육감이 계속 교육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뀌면 또 언질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 뭐가 있어야 될 것이예요.

● 부교육감 박동기

예,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타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20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폐회)

○ 참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박동기,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별첨 2.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3.





(별첨 1)

# 議 事 日 程(案)

第 20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 臨 時 會 )

1993. 2. 18. - 2. 19. (2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3.2.18(목) 11: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2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 설명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2.18 - 2.19. (2일간)
2. 19(금) 10:3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결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3.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 기타 안건처리  【 제2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 별첨 2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
----------	------

발의년월일 1993년 2월 2일

발 의 자 이 상 일 교육위원(인)  
외 3인

### 1. 제안이유

정기회 회기를 늘려 실질적인 안건심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소위원회를 관련 조례 등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명칭으로 정리하고자함.

### 2. 주요골자

가. 정기회 회기를 5일간 늘려 20일로 함

(안 제4조 제3항)

나. 소위원회를 실제 활용되는 명칭으로 정리

(안 제36조 제3항)

- 조례·정원심사소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와 정원심사소위원회로 구분)
- 감사·조사소위원회(감사소위원회와 조사소위원회로 구분)

### 3. 참고규정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원심사규칙  
(제5조 제2항)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 제57조 제3항)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3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심사소위원회
2. 청원심사소위원회
3.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4. 예산·결산소위원회
5. 감사소위원회
6. 조사소위원회

제48조 제2항중 "제36조 제3항 제3호"를 "제36조 제3항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회기) ①-②(생략)</p> <p>③ 정기회 회기는 <u>15일</u>, 임시회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p>	<p>제4조(회기)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u>20일</u>, .....</p> <p>.....</p>
<p>제36조(소위원회의 설치)①-②(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u>조례·정원심사소위원회</u></p> <p>2. <u>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u></p> <p>3. <u>예산·결산소위원회</u></p> <p>4. <u>감사·조사소위원회</u></p> <p>④ (생략)</p>	<p>제36조(소위원회의 설치)①-②(현행과 같음)</p> <p>③ .....</p> <p>.....</p> <p>1. <u>조례심사소위원회</u></p> <p>2. <u>정원심사소위원회</u></p> <p>3. <u>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u></p> <p>4. <u>예산·결산소위원회</u></p> <p>5. <u>감사소위원회</u></p> <p>6. <u>조사소위원회</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8조(예산안의 심의 또는 심사)</p> <p>① (생략)</p> <p>②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u>제36조 제3항 제3호</u>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p> <p>③ (생략)</p>	<p>제48조(예산안의 심의 또는 심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제36조 제3항 제4호</u> .....</p> <p>.....</p> <p>③ (현행과 같음)</p>

## (참 고 규 정)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제2조 제1항

위원회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소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한다.

#### 제3조 제3항

의장은 제2항의 조사여부에 대하여 의결한 후 조사소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원심사규칙

####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결로써 정원심사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회부할 수 있다.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 제48조 제2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제3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 제57조 제3항

위원회는 징계 또는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다.

(별첨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20 - 2
--------------	--------

제출년월일 : 1993. 2.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 정 이 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임용자격기준 조항을 두고 있어 새로운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개정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규채용 업무가 지연되는 등 행정능률의 저해요인이 있어 임용자격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하여 행정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가.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함.
- 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 다. 학생수련요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함.
- 라. 시행규칙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3. 근 거 법 령

- 가. 국가공무원법 (1991.11.30 법률 제4408호) 제2조 제4항
- 나.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1989. 3. 2 대통령령 제12661호) 제3조 제3항
- 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1989. 4. 1 총무처예규 제217호)
- 라. 지방공무원법 (1991.12.14 법률 제418호) 제2조 제4항

4. 개정조례안 : 불 임

5. 참 고 사 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임

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1985.11. 1 조례 1449호)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한다.

제2조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한다.

제4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 에관한조례</p> <p>제1조 (생략)</p> <p>제2조 (적용범위) <u>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별 정직공무원</u> . . . . .</p> <p>제3조 (생략)</p> <p>제4조 (임용자격)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임용자격에 관하여 <u>총무처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u></p> <p>④ 학생수련요원 <u>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 은 다음과 같다.</u></p>	<p>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 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적용범위)<u>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 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u> . . . . .</p> <p>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4조 (임용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는 직무분야 별 및 상당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삭제)</p>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5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 지자로서 전역 증명 또는 소령인 자</li> <li>·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교 또는 교육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유관기관단체에 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ul>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 지자로서 전역대위 또는 중위인 자</li> <li>·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교 또는 교육행정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 인 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에서 재직한 봉사한 경력이 3년이상 자</li> </ul>

현행		개정안
7급상당	·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유관 기관 단체에서 재직 봉사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8급또는	·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 소지자로서 전역하사관 또는 병인 자	
9급상당	· 임용예정분야와 관련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유관 유관기관 단체에서 재직 봉사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제5조 - 제14조 (생략) (신설)	제5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발췌서

## 1. 국가공무원법 (1991. 11. 30 법률 제4408호)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 ③항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1989. 3.27 대통령령 제12661호)

제3조 (임용자격) ① - ②항 생략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 별 및 상당계급별로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 3.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1989. 4. 1 총무처예규 제217호)

### 1. 목 적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계획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자격 등 인사관리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5. 생 략

## 4. 지방공무원법 (1991. 12. 14 법률 제4418호)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 ③항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1985. 3. 8 조례 제1416호)

개정 1985.11. 1 조례 제144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공무원중 읍장, 면장 및 시의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 제3항 제2호 다음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권자) ①도지사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4조 (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을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직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③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당면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면퇴직한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 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정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부 칙

( 생 략 )